

- 2026년 8월 중 -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 안내문

추진목표

- ◇ '선(先) 지도, 후(後) 단속'을 통한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및 불법어업 예방, 투명·공정한 행정 구현

1 육·해상 지도점검 계획

□ 최근 주요 다발민원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 (주요내용) 금지체장·금어기 위반, 무허가 어구·어업,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최근 접수된 다수 민원사항에 대한 집중 단속·점검 예정

* 정식민원 접수된 사항은 개별적으로 위반사항 확인·점검 실시 후 결과 통보

구분	주요 점검 내용
금지체장·금어기	▶ 동해안 청어(20cm), 대문어(600g) 체중·체장 미달 ▶ (암컷)대게, 붉은대게, 외포란 꽃게 포획
무허가 어구·어업	▶ 남해안 일원 무허가 형망, 호망, 잠수기 어업 ▶ 형망, 잠수기, 고데구리 어구 불법 개조
조업(포획)금지구역	▶ 근해자망 살오징어 포획금지구역 등

□ 지네통발 유통·판매·사용행위 특별단속 추진(7.10~8.31)

- (점검사항) 해상 바지선, 양식장 등에 무허가 불법어구(지네통발*) 적재·보관·부설 및 불법어구 생산·판매 업체 등 육·해상 일제 합동 점검

* 사각통발 연결형태(15m), 주로 하구, 갯벌 등에 다수 설치, 꽃게·청게·새우 등 어획
↳ 규格外 어구로, 그물이 촘촘하고, 통발 밀집배치로 길목차단하여, 치어 포함 과도한 어획

□ 참다랑어 불법 포획·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 (점검사항) 강원·경북 참다랑어 쿼터 전량 소진(또는 임박)에 따른 포획 금지명령에 따라 정치망 등 주 포획 업종에 대한 점검 강화

- 「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쿼터량 준수 여부 및 육·해상 유통 경로 추적·감시를 통한 불법 전재·양륙 점검

* (강원·경북) 정치망 및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한 포획 정지 및 위탁 판매금지 조치(~현재)

□ 접경수역 출어선 안전관리 및 외국 EEZ 침범조업 예방 관리강화

- (침범조업) 외국 EEZ* 경계선 근접조업 어선(부설형 어업 및 저인망 등)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하고, EEZ 침범조업 집중 모니터링
 - 특히, 남해안 한·일 EEZ경계선(100, 106해구) 인근 눈볼대 조업중인 서남구저인망·연근해자망 등의 日EEZ 근접·침범조업 강력단속
 - 항적자료, 침범거리, 반복횟수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대상 지정, 고의적인 침범조업 정황 발견시 강력 지도·단속 실시
- * (주의사항) ①GPS 위치오차 고려하여 EEZ경계선과 안전거리 유지필수(조업 준비과정도 어업의 일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음), ②측지계(동경-세계) 혼용사용 금지
- (횡단어선) 한·일 중간수역에서 연료절감 등을 위해 EEZ 횡단 증가, 횡단 시 어구격납 철저, 지도선과 통신채널 구축 등으로 피랍방지

□ 동해안 대게 불법어업 지도·단속

- 암컷,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판매, 암컷대게 통발미끼 사용 및 ‘대게·붉은대게류 통발사용금지구역(주11해역)’ 위반 등

< 중점 단속대상 >

- ▶ 암컷 및 체장미달, 금어기 등 불법 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 * [금지체장/금어기] 대게(9cm이하/6.1~11.30), 붉은대게(-/통발 7.10~8.25)
- ▶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 * 경북(경주~울진) 수심 420m 경계선 내 대게포획금지(연중, 주11해역)
- ▶ 그물코 금지 규격(통발 150mm 이하, 자망 240mm 이하) 위반
- ▶ 대게 TAC 초과어획, 어획량 미보고·거짓보고, 지정 판매장 위반(사매매) 등

□ 조업구역 이탈 및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집중단속

- (107도선) 경상북도-울산광역시 경계 107도 연장선 침범조업* 관련 기선권현망, 서남구·동해구저인망, 동해구트롤 지도점검
- * 107도선 기준 기선권현망·서남구저인망 북상조업 금지, 동해구저인망 남하조업 금지

< 107도선 관련 경북-울산 경계와 해안선의 교차점 좌표 >

측지계	도-분 표기	도-분-초 표기
WGS84	35-39.070N, 129-27.067E	35-39-04.22N, 129-27-04.06E

- **(128도 이동조업)** 악천후 시 대형기선저인망, 대형트롤의 동경 128도 기준 동쪽 해역 조업 여부 및 허위 위치보고 등 지도·점검
 - * 부산·경남 출항하여 남해연안 인근 위치발신장치 고의 차단 후 불법조업 집중관리
- **(조업금지)** 동해구트롤의 경북연안 근접조업, 서남해구중형저인망 (외·쌍끌이) 경남 홍도~남여도 조업금지구역 침범조업 여부 지도·점검
 - * 현측식 동해구트롤의 선미경사로 등 유사시설(탈부착식 핸드레일) 설치여부 병행점검
- **(불빛금지)** 야간 시간대, 선망(대형·소형·연안) 어업의 연중 불빛이용 금지구역* 내 불빛을 이용한 불법조업 여부 집중 점검
 - *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7의 주2)의 해역 및 추자도와 거문도 주위 7,400미터 이내의 해역

□ 어선 위치발신장치 상시작동 지도·점검

- **(D-MF/HF)** 고의로 미작동하거나, 어선 상시전원이 아닌 배터리 모드로 작동하는 등 위치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어선 집중점검
 - * (설치대상) 기선권현망·잠수기 어업을 제외한 모든 근해업종
 - ** (미설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작동)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위치소실)** 대형 인명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동절기(11월~익년 3월) 중 사고 개연성이 높은 위치신호 연속소실* 어선에 대한 조기대응 실시
 - * 2개 종류 이상의 어선 위치발신장치 신호가 10분 이내 간격으로 수신되지 않을 경우
 - ** (운영) 위치소실 알람 발생시 대응시간 축소(60분→30분), 안전확인 불가 시 구조기관 즉시 통보
- **(고장신고)**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사실 미신고, 고장신고 이후 수리 등의 조치 미이행 시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과태료 부과
 - * 고장·분실 시 지체없이 관할 해경에 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등의 조치 필요

□ 구명조끼 상시착용

- (주요내용) 기상특보 및 승선인원과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노출된 갑판에 있을 시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 확대* 추진

* (기존) 특보 시 노출갑판, 특보 무관 2인 이하 → (변경) 모든 어선원 상시착용(26.7.1.)

※ 위반시 과태료 (1차) 9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300만원

□ 어선 건조·개조업 등록제 실시

- (주요내용) 어선을 건조·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춰 등록하도록 하여 안전한 어선 건·개조 유도 및 불법 증·개축 차단

- 어선검사 후 상태유지 의무*가 선주와 건·개조업자까지 확대되고 위반시 영업 정지 또는 취소 등 처분**규정이 신설

* (기존) 어선소유자 → ('25.12.21~) 어선소유자+건조·개조업자(「어선법」 제9~10조 신설)

** 등록기준 미달, 변경등록 미이행, 어선 불법 개조 →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 등록취소

□ 어선위치발신장치 전자적 고장·분실 신고방법 도입

- (주요내용)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분실 발생 시 파출소 등 현장방문을 통한 신고에서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신고 서비스 확대 시행('25.09.15~)

* 어선출입항신고시스템(<http://coss.kcg.go.kr> 또는 앱) →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 신고 탭 이용

□ 어선 위치통지 제도 개선

- (주요내용)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조업자제해역을 포함한 전 해역 내 풍랑·태풍특보 시 위치통지 개선

* (일반해역) 매 24시간 이내 / (특정·조업자제해역) 매 12시간 이내 / (풍랑특보) 해역구분 없이 매 12시간 이내 / (태풍특보) 해역구분 없이 매 4시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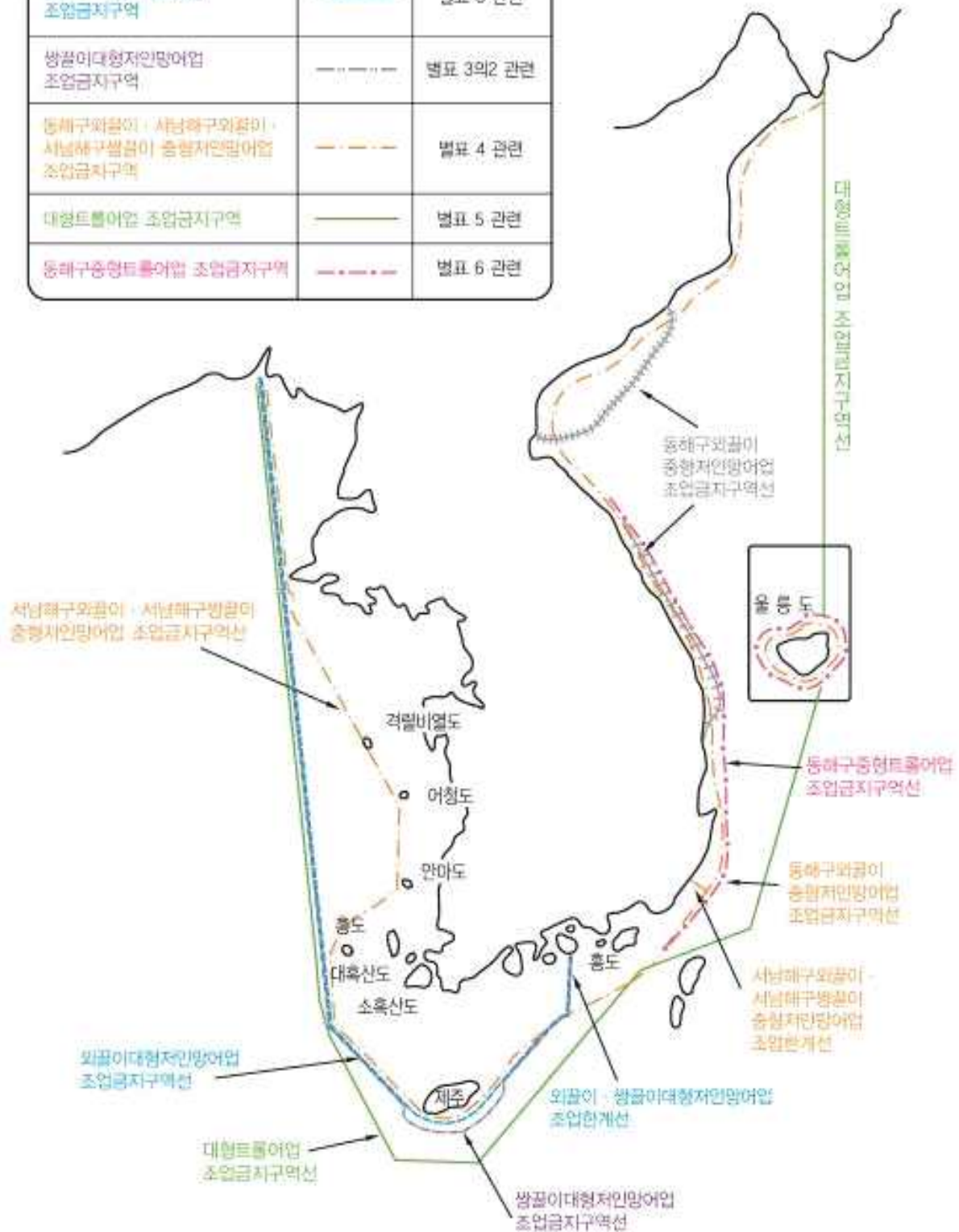
□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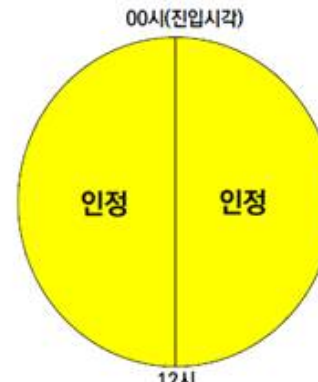
- (신고대상) 조업구역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 금어기·금지채장 등 포획채취 위반, 불법어획물 유통·판매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사항

* (신고방법) 1588-5119(전화), 인터넷(동해단 홈페이지), 모바일(카톡 채널, 국민신문고 등)

** (포상금액)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

어업별	범례	비고
외곽이대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3 관련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3의2 관련
동해구외끌이·서남해구외끌이· 서남해구쌍끌이 중형저인망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4 관련
대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5 관련
동해구중형트롤어업 조업금지구역	-----	별표 6 관련



구 분		현 행		개 정	
평시	일반 해역	1회	매일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후 통지 	1회	최초 통지는 출항시각 기준 24시간 이내,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24시간 이내 * 2회차 통지는 1회차 통지 기준 24시간 이내, 3회차 통지는 2회차 통지 기준 24시간 이내, 이후 동일한 방법 
	특정 해역	3회	매일 출항시각 기준 6시간 후 통지, 2·3번째는 이전통지와 6시간 이상 간격으로 통지 	2회	최초 통지는 특정해역 진입 후 12시간 이내,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12시간 이내 
	조업 자제 해역	2회	매일 출항시각 기준 8시간 후 통지, 2번째는 이전통지와 8시간 이상 간격으로 통지	2회	최초 통지는 조업자제해역 진입 후 12시간 이내, 이후에는 직전의 통지 시각 기준 12시간 이내
기상 특보 시	풍랑 특보	평시+2회 *ex) 일반해역 3회(1+2)	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12시간마다 통지 (전후 30분 이내만 인정) 	전해역 2회	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12시간 이내 (평시 위치통지 의무는 면제) 
	태풍 특보	평시+6회 *ex) 특정해역 9회(3+6)	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4시간마다 통지 (전후 30분 이내만 인정)	전해역 6회	특보 발효시각 기준 매 4시간 이내 (평시 위치통지 의무는 면제)

점검대상	점검내용	제재사항
관리기관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카드 등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②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	가산세* 징수 *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어업인	①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취득·양도 또는 사망·이어(離漁)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동내용 미신고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②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③ 어업기계 및 선박의 사용실적, 어업기계 및 어업용 시설의 생산실적을 최종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	1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④ 어업용 외 용도 사용(자동차, 가정용 보일러, 무허가 어선 및 시설 등)으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사유 발생 시	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
	※ 상기 4가지의 사유로 면세유 사용 불가 시, 그 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	
	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 그 외, 면세유 사용 불가 기간 안내 ◆ - 어업 등에 대한 제한(취소, 감척 등)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해당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 「수산업법」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 과징금(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 기준)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	
석유 판매업자	① 신청하여야 할 환급·공제세액을 초과 신청	감면세액 추징
	②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세액 신청	감면세액 + 가산세* 추징 *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 감면세액 추징 사유 발생 시, 관리기관 중앙회는 면세유 판매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불가(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체장 홍보물

종 명		금지 채종	금 지 기 간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꽃게		6.4cm	외부 일부에 알이 붙어있는 꽃게의 알착 : 단종유희금지					6.21~8.20*							*수컷의 알착이 발견되면 채종이 불가능한 경우 일주일동안 채종이 금지됨	
대게		9cm	대게의 알착 : 연중유희금지					6.1~11.30					물길 130cm 이하의 대게는 6.1~10.31, 2차 2월달부터는 6.1~10.31로 변경			
대하		-						5.1~6.30								
만꽃게		-	부부 외부에 알이 붙어있는 만꽃게와 알착 : 연중포획금지													
붉은대게		-	붉은대게의 알착 : 연중유희금지					7.10~8.25							연중 채종이 가능한 것은 6.1~7.31	
가리비		-	3.1~6.30*										수컷의 알착이 발견되면 채종 기간이 연장됨			
기수재첩		각장 1.5cm														
마대 오분자기		각장 4cm (제주도산형)														
오분자기		각장 4cm (제주도산형)						7.1~8.31		제주특별자치도 한정						
새조개		-						6.16~9.30					다른 부속 물산 채종 연한 5월 1일부터 변경, 제주도는 6.1~9.30			
소라		각장 5cm (제주도, 울릉도, 독도산은 7cm)						연안(제주도산)은 6.1~6.30 제주도 6.1~8.31 (제주도 7.1~8.31) 울릉도, 독도 6.1~7.31							수컷의 알착이 발견되면 채종 기간 연장	
전복류		각장 7cm (제주도산은 10cm)											9.1~10.31		제주특별자치도 한정 10.1~12.31	
키조개		각장 18cm (부산, 울산, 강원, 경북, 경남에 한정)						7.1~8.31								
코끼리 조개		-						5.1~6.30		연중 채종 가능						
낙지		-						6.1~6.30		채종 기간 6.1~6.30까지 1개월로 한정하며 7월을 채종기간으로 하는 경우 2개월 *오로형					*연중 채종 가능, 연중 채종 기간은 6.1~7.31, 연중 채종 기간은 6.1~7.31, 연중 채종 기간은 6.1~7.31	
대문어		체중 600g														
살오징어		외투장 15cm	4.1~5.31										연중 채종 가능, 연중 채종 기간은 4.1~5.31			
주꾸미		-						5.11~8.31								
해삼		-						7.1~7.31								
참문어		-						5.16~6.30		채종 기간 5.16~6.30까지 1개월로 한정하며 7월을 채종기간으로 하는 경우 2개월 *오로형					*연중 채종 가능, 연중 채종 기간은 6.1~7.31, 연중 채종 기간은 6.1~7.31	
넙치		-											9.1~11.30		제주특별자치도 한정	
우뚝 가사리		-	~3.31										11.1~			
돔		-	~1.31										10.1~			

**적극행정으로
어업질서 확립**

**법 위반하는 행위
더 안전한 국민**

어린물고기

잡지도, 사지도, 팔지도, 먹지도 맙시다!

〈 2025년 1월 제작 〉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등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불법 포획·채취한 자, 불법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7조, 제64조 제1호, 제2호

신고포상금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어선원 대상,
 사법처분 최고 600만원, 행정처분 최고 400만원 지급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신고센터 1588-5119

동해어업관리단 051-410-1030~39

[어업정보확인용]

[법정처분 신고]

수산물종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 별도 금지 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참조

• 다만, 갈치, 고동어, 참조기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6943호, 2016.2.3)에 따라 금지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어 류	오징어 류	패 류	갑각 류
 향문갈 전갈	 외투갈 각갈	 각고 두홍갑갈	 두홍갑갈 두홍갑갈

